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478
----------	------

2026. 3. 4.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2. 9. 최진혁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 2. 12.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2026. 3. 4.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최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확산되면서 출입통제, 주차관리, 승강기, 에너지 관리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네트워크로 연동·운영되고 있으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 (2022.7.1. 시행)하여 공동주택 내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 등 보안강화를 의무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보안 설비 개선에 상당한 비

용이 소요되어 입주민의 자발적인 개선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지원 신설(안 제5조의4)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홈네트워크 설비')¹⁾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14조의 2에 따라 세대간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1)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함(「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제1호)(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현행	개정안
<신 설>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지원) ① 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인이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는 민간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네트워크 분리(망 분리)’란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망을 서로 분리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을 의미²⁾하는데, 사업 주체가 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술기준³⁾에 따라 단지서버⁴⁾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⁵⁾ 사이의 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구성하여야 함.

- ‘물리적 분리’는 단지서버로부터 각 세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회선을 세대수만큼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논리적 분리’는 네트워크 회선을 타세대와 공동으로 이용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의미함⁶⁾(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2) 출처: AhnLab(<https://www.ahnlab.com/ko/contents/content-center/14140>)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 ①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2021.12.31. 개정, 2022.7.1. 시행)

4)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를 말함.

5)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말함.

6) 출처: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러한 규정은 2021년 말, 아파트 700여 곳에서 월패드 해킹으로 입주민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⁷⁾이 발생한 이후 도입된 제도이며, 2024년 5월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범위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⁸⁾되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기축 아파트에 대한 보안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⁹⁾.
- 그러나, 제도개선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제도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승인’)된 아파트가 다수 존재¹⁰⁾하고 있어, 실제 보안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며¹¹⁾, 특정 브랜드의 고가 모델을 구입하는 등 입주민이 비용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¹²⁾도 제기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네트워크 망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사생활 정보유출 예방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아파트 700곳 월패드 해킹 사생활 유출 의혹”(뉴스1, 2021.12.06.)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2024.5.22.개정·시행)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9)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482&lang_type=KO&page=1

10)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 확인 결과, 2022년 7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아파트는 총 2,727단지, 1,608,316세대인 것으로 확인됨

11) ““700단지 월패드 해킹 잇었나”...보안규정 바꿨지만 구멍 ‘숨숨’”(연합뉴스, 2024.11.17.)

12) 국제 보안통신 규격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사설통신망(VPN)업체가 각자 다른 방식을 취해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월패드와 단지서버 중간에 위치한 통신규격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브랜드의 고가 월패드를 구입하거나, 월패드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아파트 보안 망분리 호환 안돼 입주민 비용 부담”(전자신문, 2025.8.17.))

가. 지원항목 분류(안 제5조의4제1항)

- 먼저, 홈네트워크 설비의 네트워크 분리방식 중, ‘물리적 분리’ 방식은 네트워크 회선 상에 세대별로 각각 전용선 라우터¹³⁾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논리적 분리방식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임¹⁴⁾. 또한, 법 시행규칙¹⁵⁾에 따르면 홈네트워크기기 및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¹⁶⁾.
- 반면, ‘논리적 분리’ 방식은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항은 법 시행령 별표²(17)에 따른

13) 라우터는 여러 컴퓨터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임. 라우터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트래픽을 라우팅하고 데이터 패킷이 올바른 목적지로 전송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제공함

(https://www.lenovo.com/kr/ko/glossary/router/?orgRef=https%253A%252F%252Fwww.google.com%252F&srsId=AfmBOor4vSWI1786uTnFX7Mn1PBLCqiyMQex_Okc6_6f09pdHjtZ1-Gd)

14) 물리적 망분리는 보안성이 높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논리적 망분리는 물리적으로 여러개의 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구축 비용이 저렴함(“아파트 망분리로 ‘월패드 해킹’ 막는다...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갖춘 보안 솔루션 필요”(동아일보, 2022.10.13.))

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	전면교체	10	100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20	100	

16) 법 제85조 등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이하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또는 주민공동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관리비 지출 및 장기수선계획 대상(검토보고서 붙임4. 참고)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모범단지 지원사업 지원 내용>(출처: 2026년 공동주택 모범단지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실외 공용 충전시설 설치
-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1개 단지당 최대 3천만원 한도(관리주체 자부담률 10% 이상)

17) 참고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관리비항목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85조제1항18)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11조19)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지원사업’²⁰⁾(이하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이를 통해 관리노동자 휴게실 또는 주민공동시설을 보수하거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²¹⁾의 안전관리(조례 제5조의2²²⁾)와, 공동주택 화재안전과 관련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근거(조례 제5조의3²³⁾)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명세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18)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9) 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와 입주민 등 구성원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지원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2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함(법 제34조)
- 22) 조례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3. 그 밖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23) 조례 제5조의3(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

조례안에 따른 홈네트워크망의 논리적 분리 방식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지원의 근거마련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지원 대상(안 제5조의4제2항)

○ 안 제5조의4제2항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²⁴⁾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²⁵⁾를 구성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지원신청 등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지원예산을 집행할 주체가 없으므로, 주민 자치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²⁶⁾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시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에 관한 지원사항은 제외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기술기준이 개정되어 홈네트워크 망분리 의무가 시작된 2022년

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24)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함.

25)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해야 함(기술기준 제14조제1항)

2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²⁷⁾으로서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다. 지원비용의 범위(안 제5조의4제3항)

- 제5조의4제3항은 민간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로 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 사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통상 최대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단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선정된 단지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 10% 이상)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용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 특히, 현재 네트워크 분리에 관한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비종류 및 방식 등에 따른 보안수준과 투입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참고로, 202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네트워크 분리에 세대당 151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되었는데²⁸⁾ 이를 토대로, '22년 7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의무관리대상 아파

27) 개정된 기술기준 부칙에 따라 기술기준 제14조의2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해야 함

기술기준 부칙 <제2021-153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8) 202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트 세대수(2,370단지, 1,404,780세대)²⁹⁾의 10%를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 산출 시, 약 2,121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³⁰⁾.

라. 종합의견

- 종합하면, 개정조례안은 기술기준 개정 전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단지에 대해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지원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분리기술이 표준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시점을 기술기준 표준화 이후로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은 네트워크 분리방식과 연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끝으로, 지원대상을 민간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국한하고, 지원범위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안 제5조의4제4항), 안 제3항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으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된 단지에 적용하도록 부

대 규모 아파트에서는 7억 5,815만원, 세대당 151만원 수준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비용이 발생한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있음. (“김영식 “공동주택 망분리시 세대당 151만원 비용 부담”, 파이낸셜 뉴스, 2022.10.11.)

<세대당 151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동주택 세대규모별 비용추정>

세대 규모	예상 설치비 총액(대략적 추정)	세대당 부담금
소규모 단지(30세대)	약 4,500만 ~ 5,000만원	150~167만원
중규모 단지(100세대)	약 1억 5,000만원 ~ 2억원	150~200만원
대규모 단지(300세대)	약 4억 5,000만원 ~ 5억원	150~167만원
대규모 단지(500세대)	약 7억 5,000만원 ~ 8억원	150~160만원

29)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서울 열린데이터 광장)를 사용함

30) 참고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사업 중 시설개선 및 관리노동자 등 지원 항목으로 25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됨.

칙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 설></p>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지원) ①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이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는 민간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지원) ① ---- 공동주택 입주민이</p> <p>-----</p> <p>-----</p> <p>-----</p> <p>-----</p> <p>-----</p> <p>-----</p> <p>② -----</p> <p>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p> <p>-----</p> <p>-----</p> <p><삭 제></p> <p>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p>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적용례) 개정조례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u></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의4)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78
----------	------------

제안일자 : 2026. 3. 4.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동주택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지 원) ① 시장은 「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 비 설치 및 기술기 준」 제14조의2에 따 라 공동주택 입주민 이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세대 간 네트 워크 분리를 수행하 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 산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지능 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 설치된 공동주택 으로 한다.</p>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 비를 설치하거나 교 체하는 경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 크 설비 설치 및 기 술기준」 제14조의2 에 따라 세대 간 네 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p> <p><삭 제></p>

③ 제1항에 따른 예
산의 지원범위는 민
간주택의 경우 사업
비의 70퍼센트 이하
로 하되 최대 3억원
을 초과할 수 없으
며,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예
산의 지원범위와 절
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다.

<삭 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u></p>